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박승환 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	보 도 자 료 2023. 6. 2.(금)

제 목	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중 근로자 추락사 사건 관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❑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(부장검사 이준범)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,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여 소속 업체 대표이사를 오늘(6. 2.) **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**하였음

❑ 수사 결과,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였을 뿐 중대재해처벌법상 **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대 착용, 추락방호시설 등 기본적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아니**하였고, 이로 인해 **근로자가 사망**에 이른 사실을 확인하였음

❑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로서, 앞으로도 검찰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

1 사건 개요

□ 중대산업재해 개요

○ '22. 3. 25.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던 甲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함

※ 공사금액 66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

□ 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

1. 甲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

○ 甲사의 사용인인 현장소장이 △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, △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, △ 추락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
2. A○○(甲사 대표이사) 및 甲사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

○ 대표이사 A○○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

- ①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, ② 재해 예방 인력·시설·장비 구비 및 유해·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,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

2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○ 검찰은 발생 직후부터 고용노동청,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甲사의 안전보건관리 관련 서류를 신속하게 수집·확보하고, 관련자들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였으며,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음

○ 수사결과, 대표이사 A○○은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채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였고,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음

- 또한,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·개선절차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회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,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밝혀냄

※ 다만,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여 불구속 기소함

○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(서울 소재 검찰청 첫 번째 사례)로서, 앞으로도 검찰은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▒